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2. 10.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2022. 10. 13.  
경 제 도 시 위 원 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서민우 의원 등 6명(박정환, 황국주, 이진환, 김장관, 이선주)
- 발의일자: 2022. 9. 30.
- 회부일자: 2022. 9. 30.
- 검토기간: 2022. 9. 30.~ 10. 6.(7일간)

### 2. 개정이유

-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재난대응과 수습복구를 위해 주요인사 현장 방문 시 안내 · 설명 및 현장 통제 관련 강화사항, 통합지원봉사지원단 설치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 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일부내용 개정 및 별표2의 현장대응반 소관부서를 현행화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하는 재난 발생 경우의 일부내용 삭제(안 제4조제3항제1호 삭제, 현행 제2호~제5호를 제1호~제4호로 이동)

-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의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해 피해자 가족면담업무 추가(안 제7조제4항제6호) 및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신설(안 제7조제4항제7호)
- 주요인사 방문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업무 수행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제5항 신설)
- 재난현장 통제 관련 강화 조항 개정(안 제19조제2항)
- 통합지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관련 조항 삭제(안 제21조 삭제)
- 별표 2의 현장대응반 소관부서 수정

#### 4.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17조의2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2. 9. 30. ~ 2022. 10. 11.)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재난대응과 수습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 및 삭제, 개정하고 소관부서명을 현행화 하려는 사항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행정안전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제3항 중 제1호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 경우,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를 삭제하였고,
  - 안 제7조제4항제6호 및 제7호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편성 및 업무 중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면담 업무와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제5항에서는 주요인사 방문 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통합 지원본부간 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재난현장 주변통제와 관련하여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 하였으며,
  - 현행조례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21. 9. 23. 시행됨에 따라 삭제 하였고,
  - 별표 2의 현장대응반 부서란 중 소관부서 환경보호과를 기후환경과로 현행화 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 · 운영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 하여 개선 · 보완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수습 복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 등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호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 경우,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7조제4항제6호 중 “언론대응”을 “언론대응 및 피해자 가족면담”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안내 및 브리핑

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4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제2항 중 “따라야”를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현장대응반의 부서란 중 “환경보호과”를 “기후환경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br/>         ① ~ ② (생 략)</p> <p>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u>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 경우, 교통사고는 제외한다.</u></p> <p><u>2. ~ 5. (생 략)</u></p> <p>④ (생 략)</p> | <p>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br/>-----<br/>-----<br/>-----.</p> <p><u>&lt;삭 제&gt;</u></p> <p>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 <p>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 ③ (생 략)</p> <p>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p> <p>1. ~ 5. (생 략)</p> <p>6. 재난현장에서의 <u>언론대응</u></p> <p><u>&lt;신 설&gt;</u></p> <p>7. (생 략)</p>                           | <p>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br/>-----<br/>-----.</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언론대응 및 피해자 가족면담</u></p> <p>7. <u>주요인사 방문 시 현장안내 및 브리핑</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

|  |   |
|--|---|
| <p><u>&lt;신 설&gt;</u></p>  | <p><u>⑤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제4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u></p> |
| <p>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생략)<br/><br/>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u>따라야</u> 한다.</p>   | <p>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현행과 같음)<br/><br/>② -----<br/>-----<br/>-----<br/><u>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u></p>  |
| <p>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br/><br/>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br/>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br/>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br/>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p> | <p><u>&lt;삭 제&gt;</u></p>   |

## 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3)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 구 분                 | 주 보 임 무  | 부 서  |
|---------------------|--|--|
| 통합지원본부장<br>(부 구 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대응·수습 총괄</li> <li>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li> <li>구조활동 외로 우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인의 역할분담 및 내용활동 조정</li> </ul>         |  |
| 홍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 미디어 홍보</li> <li>방송정보 모니터링</li> <li>내총단체 정보공유</li> </ul>  | 홍보전선과  |
| 현장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간·유관기관간 협업</li> <li>민관단체·민회관 협업</li> </ul>  |  |
| 상황총괄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li> <li>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li> <li>세년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li> </ul>                                     | 제년수습 주관부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지원본부 운영</li> <li>세년면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 상황보고</li> <li>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li> </ul>   | 인천도시과  |
| 현장내총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등급복구</li> <li>에너지 복구(전기, 가스, 유류 등)</li> <li>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li> <li>차량지원 및 근무인력지원</li> <li>환경정비</li> </ul> | 피폐시설<br>주관부서<br><br>환경보호<br>경재지연과<br><br>보건환경과<br><br>총무과<br><br>청소과 |
| 자연재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통신지원</li> <li>자연재난(중·증비 등)</li> <li>교통내체(내장교통 우회조치 등)</li> <li>사고현장 주·경차 관리</li> <li>작업봉사자연</li> </ul>            | 홍보전선과<br><br>건설과<br><br>교통행정과<br><br>주차관리과<br><br>행복나눔과              |
| 대민재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민정지원</li> <li>이재민구호·심리지원</li> <li>장애인 등</li> </ul>  | 복지정책과<br><br>어르신장애인과   |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 구 분                 | 주 보 임 무  | 부 서   |
|---------------------|--|---|
| 통합지원본부장<br>(부 구 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대응·수습 총괄</li> <li>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li> <li>구조활동 외로 우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인의 역할분담 및 내용활동 조정</li> </ul>         |   |
| 홍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 미디어 홍보</li> <li>방송정보 모니터링</li> <li>내총단체 정보공유</li> </ul>  | 홍보전선과   |
| 현장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간·유관기관간 협업</li> <li>민관단체·민회관 협업</li> </ul>  |   |
| 상황총괄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li> <li>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li> <li>세년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li> </ul>                                     | 제년수습 주관부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지원본부 운영</li> <li>세년면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 상황보고</li> <li>현장민원 접수 및 처리</li> </ul>   | 인천도시과   |
| 현장내총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등급복구</li> <li>에너지 복구(전기, 가스, 유류 등)</li> <li>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li> <li>차량지원 및 근무인력지원</li> <li>환경정비</li> </ul> | 피폐시설<br>주관부서<br><br>기후환경과<br>경재지연과<br><br>보건환경과<br><br>총무과<br><br>청소과 |
| 자연재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통신지원</li> <li>자연재난(중·증비 등)</li> <li>교통내체(내장교통 우회조치 등)</li> <li>사고현장 주·경차 관리</li> <li>작업봉사자연</li> </ul>            | 홍보전선과<br><br>건설과<br><br>교통행정과<br><br>주차관리과<br><br>행복나눔과               |
| 대민재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민정지원</li> <li>이재민구호·심리지원</li> <li>장애인 등</li> </ul>  | 복지정책과<br><br>어르신장애인과  |

# 관 계 법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참고자료1 | 현행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현장의 총괄 ·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 ·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구조 지원, 응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 · 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기관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 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 경우,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화재, 붕괴, 유류·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원활한 통합대응을 위하여 재난 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 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 제2절 재난현장 출동

-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 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 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절 재난현장 수습·복구체계 전환**

**제17조(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 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에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과 자원·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등 그 밖에 재난현장에 필요한 사항 등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협조
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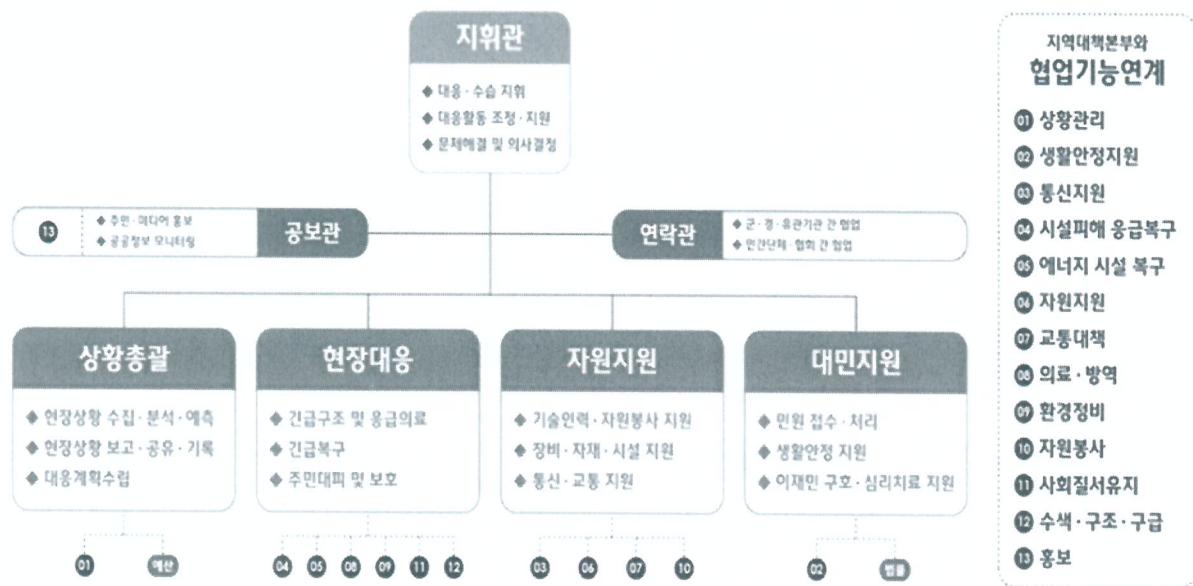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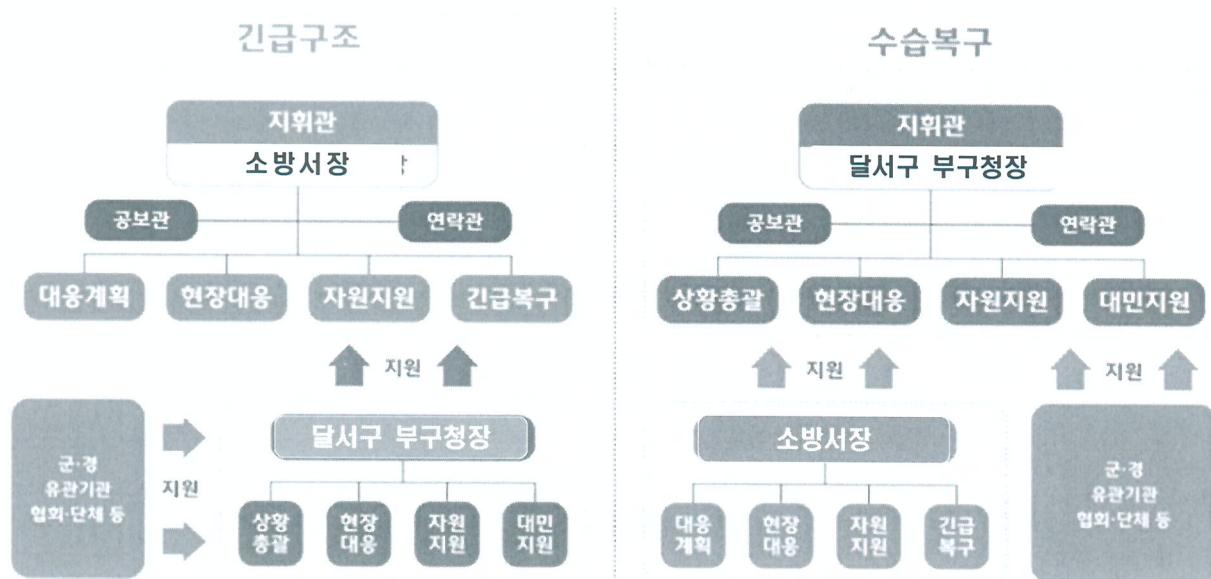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위 편제를 기본으로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 구 분               | 주 요 임 무  | 부 서            |
|-------------------|--|----------------|
| 통합지원본부장<br>(부구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대응·수습·총괄</li> <li>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li> <li>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li> </ul> |                |
| 공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 미디어 홍보</li> <li>공공정보 모니터링</li> <li>대응단체 정보공유</li> </ul>  | 홍보전산과          |
| 연락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경·유관기관간 협업</li> <li>민간단체·협회간 협업</li> </ul>  |                |
| 상황총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li> <li>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li> <li>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li> </ul>                             | 재난수습 주관부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지원본부 운영</li> <li>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 상황보고</li> <li>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li> </ul>                                 | 안전도시과          |
| 현장대응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응급복구</li> </ul>  | 피해시설별 주관부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복구(전기, 가스, 유류 등)</li> </ul>   | 환경보호과<br>경제지원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li> </ul>   | 보건행정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량지원 및 근무인력지원</li> </ul>  | 총무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정비</li> </ul>   | 청소과            |
| 자원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급통신지원</li> </ul>   | 홍보전산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지원(중장비 등)</li> </ul>  | 건설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대책(대중교통 우회조치 등)</li> </ul>  | 교통행정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고현장 주·정차 관리</li> </ul>   | 주차관리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원봉사지원</li> </ul>   | 행복나눔과          |
| 대민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안정지원</li> <li>이재민구호·심리지원</li> </ul>   | 복지정책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례지원 등</li> </ul>   | 어르신장애인과        |

[별표 2]

###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

| 구 분               | 주 요 임 무   |
|-------------------|---|
| 통합지원본부장<br>(부단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대응·수습 총괄</li> <li>•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li> <li>•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li> </ul>  |
| 공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 미디어 홍보</li> <li>• 공공정보 모니터링</li> <li>• 대응단체 정보공유</li> </ul>   |
| 연락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경·유관기관간 협업</li> <li>• 민간단체·협회간 협업</li> </ul>   |
| 상황총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지원본부 운영</li> <li>•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li> <li>•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li> <li>•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li> <li>•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li> <li>•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li> </ul> |
| 현장대응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응급복구</li> <li>• 에너지 복구</li> <li>•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li> <li>• 환경정비</li> <li>•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li> </ul>  |
| 자원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통신지원</li> <li>• 현장대응 자원지원</li> <li>• 교통대책</li> <li>• 자원봉사지원</li> </ul>   |
| 대민지원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li> <li>• 생활안정지원</li> <li>• 이재민구호·심리지원</li> <li>• 장례지원 등</li> </ul>  |